

평창군폐기물관리예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년 7월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23일,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7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99년 7월27일)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가. 제안이유

- '95.8.4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법근거 조항을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안 제5조제1항, 안제6조 제2항, 안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내제 제3항, 제12조)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재질을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규정(안 제10조 제3항 제1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95.8.4일 폐기물관리법 및 '96.2.5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근거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업무 추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에 부합되게 조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에 없다고 판단되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행정누수 현상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첨 부 :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부